

“ 미래의 약속 ”



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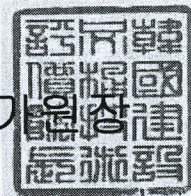
수신자 건설 교통 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
(경유)

제목 교통신기술 지정 신청 안내

1.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167호('10. 4. 1.,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) 관련입니다.
2.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평가원에서는 교통기술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고자 교통신기술 지정제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
3. 귀 기관에서 개발한 교통기술 중에 새롭게 개발하였거나 개량한 기술이 있는 경우 교통신기술로 지정받아 우수한 교통기술이 보급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아울러,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평가원 교통신기술 정보마당 (<http://tl.kictep.re.kr>)에서 확인하시거나 평가원 기술인증센터(031-389-6390)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.

- 붙임 1.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개요 1부.
2. 건설 교통 신기술 안내 1부.(별첨)
3. 교통신기술 신청안내 매뉴얼 1부.(별첨) 끝.

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



수신자

실원 이은호 기술인증센터장 전결 02/25
이종석

협조자

시행 기술인증센터-404 (2011.02.25) 접수 ()
우 431-060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0 (관양동 1600-1) 기 / www.kictep.re.kr
전화 (031)389-6390 업은행 6층 / 공개
전송 (031)381-4994 /

교통신기술 지정 제도 개요

□ 목적

- 민간의 교통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, 국내 교통기술의 발전과 수준향상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제고

□ 근거법

-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02조
-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」 제96조 내지 제101조
-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」 제42조 내지 제47조

□ 추진경위

- '09. 6. 9 :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개정
- '10. 1. 7 :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」 개정
- '10. 1. 29 :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」 제정
- '10. 4. 1 : 「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 고시

□ 신청자격

- 국내에서 새롭게 교통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(법인 포함)
- 국내에서 새롭게 개발되거나 개량된 교통기술을 승계받은 자(법인 포함)
 - ※ 최종권리자만 가능하며, 공동 소유인 경우 공동신청 가능

□ 신청대상 기술

국내에서 새롭게 개발되거나 개량된 교통기술

□ 지정대상

- 교통수단 : 자동차, 철도차량, 항공기, 선박 등의 관련기술이나 제품
- 교통시설 : 도로, 철도, 공항, 항만 등의 관련기술이나 제품
-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관한 운영·관리 : 교통수단 및 시설의 운영관련 기술이나 제품

□ 심사기준

- 신규 지정신청
 - 신규성 : 기존의 기술과 차별성이 있는 기술
 - 진보성 : 성능·품질의 우수성, 편리성, 경제성 등의 향상이 있는 기술
 - 안전성 : 기술공학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
 - 보급·활용성 :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요한 기술
- 보호기간 연장신청
 - 활용실적 : 교통신기술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연장신청일 전 까지 교통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
 - 품질검증 : 교통신기술 지정 시 제시한 성능 및 품질의 효과가 검증되고 우수성이 인정되어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한 기술

□ 교통신기술 인센티브 현황

- 기술사용료 청구, 우선적용 및 구매 권고
- 시범사업 우선 적용 및 시험시공 권고
-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시 우대
- 기술개발 보상(새로운 기술 및 공법을 사용한 설계변경으로 절감된 금액의 30%를 감액하여 계약)
- PQ 점수 부여(기획재정부, 한국도로공사)
- 우수제품 선정 우대(조달청) 등

□ 지정대상

대분류	중분류	소분류
교통 수단	자동차	승용차, 승합차, 대중교통수단(준대중교통수단, 신대중교통수단 포함), 화물자동차, 환경친화적 차량, 첨단지능형차량, 수륙양용교통수단, 수중교통수단, 기타 신교통 수단, 특수자동차 등
	철도차량	고속철도차량, 도시철도차량(중량), 도시철도차량(경량), 도시철도차량(소형), 일반철도차량(동력차), 일반철도차량(객차), 일반철도차량(화차), 신궤도교통수단, 특수차량, 자기부상차량, Combi -Road, Double stack train, 전기·디젤겸용 다목적 기관차(Hybrid형 기관차), 전기·축전지 겸용 기관차, Super-Rail Cargo, Cargo-Sprinter, 발전차 등
	항공기	사업용 항공기, 개인용 항공기, 특수목적 항공기, 실험용 항공기, 초경량비행장치 등
	선박	여객선, 화객선, 일반화물선, 컨테이너선, 살물선, 광석운반선, 목재운반선, 철운반선, 냉장화물선, 자동차운반선, 원유운반선, 액화가스운반선, 어선, 바지선, 예인선, 위그선, 초고속선, 초대형선 등
교통 시설	도로	교차로(신호교차로, 비신호교차로), 도로표지, 주차장, 노면표시, 안전표지, 주차시설, 도로시설(조명, 지주, 반사경, 중앙분리대, 가드레일, Crash cushion), 기타도로구조물, 보행자보호시설, 터미널, 화물터미널, 집배송센터, 화물취급장, 유통단지, 복합화물터미널, 여객터미널, 도로 물류시설 등
	철도	궤도, 건널목, 차량기지, 부대시설, 여객터미널, 선로구조물(터널, 교량, 토공시설, 분기기 등), 선로보수기지, 역시설,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(사무소, 기지), 전철전력시설, 송·변전시설, 신호제어시설, 정보통신시설, 비상대피설비, 철도물류시설 등
	공항	활주로, 유도로, 계류장, 착륙대, 항행안전시설, 통신관제시설, 하역보관시설, 부대지원시설, 여객터미널, 화물터미널, 도심공항터미널, 공항보안시설, 공항 물류시설 등
	항만	컨테이너부두, 항만보세창고, 냉장·냉동창고, 건하물부두, 재래부두, 항만장비, 하역장비, 연계운송장비, 피더항만, 굴입식터미널, 자동화터미널, 항만성능평가기술, 항만 물류시설, 내륙운하시설 등
운영 및 관리	도로운영	시설물관리, 신호체계관리, 통행제어, 대중교통 운영관리, 교통류분석 및 시뮬레이션, 교통관리최적화, 전자지불처리, 교통정보유통활성화, 여행자정보고급화, 대중교통활성화, 화물운송효율화, 교통사고 예방 및 조사 분석, 교통재난 및 인명구조, 도로의 첨단화, 유지관리 효율화 등
	철도운영	철도운영정보시스템, 철도관제시스템, 승차권예약발매시스템, 철도정보유통활성화시스템, 검수정보시스템, 훈련시스템, 면허시스템, 철도산업안전보건시스템, 유지보수/정비시스템 등
	항공운영	운행정보, 관제시스템, 급유 및 정비시스템, 통신시스템, 기타항행보조시스템, 훈련 시스템, 감항인증기술, 안전검사 등
	항만운영	항만운영시스템, 수문관리시스템, 항만하역시스템, 해상시설물관리, u-port 시스템, RFID 기반 통합항만시스템, 항만운영 평가기술 등

※ 개발한 기술이 상기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문의 요망